

국가유산수리기술자(국가유산수리기능자) 자격증 재발급신청서

※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일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 일반전화 : 휴대전화 :	
	자격종목	자격번호	
	자격취득일	근무처	
재발급 신청사유			

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·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조 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(국가유산수리기능자)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유산청장 귀하

		수수료
첨부서류	1. 신분증 사본(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) 2. 사진(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, 3.5cm×4.5cm) 1장 3. 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「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3의 수수료(제2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)

처 리 절 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